

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를 취소할 때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(안 제12조제1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